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3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 김준혁 · 강유정 · 안규백

이헌승 • 이수진 • 이연희

박희승 · 서미화 · 모경종

김문수 · 김영호 · 진선미

김영진 • 문정복 • 염태영

백승아 • 백혜련 의원

(1791)

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퇴학·자퇴·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미진학 등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한 해에만 52,981명이 늘었고, 2023년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산됨.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영역에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음. 무상제공 되는 초·중·고

등학교의 교과서와 달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재는 사비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교와 달리 지자체별로 소수만 설치·운영되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의 지위는 불안정하고 처우도 열악하며, 자격·수준·수도 학교 선생님에 비하여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적·권고적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 써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외에 청소년

- 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 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 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때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 학교장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현행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현행 6개월)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안 제15조제5항),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ㆍ서면ㆍ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함을 알리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준비"를 "준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도서비 등비용 지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청소년에게"를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6개월"을 각각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서면·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② (생 략)	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	③
교 밖 <u>청소년의</u> 교육복지 실현	<u>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u>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u>.</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9조(교육지원) ①
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	3
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u>준비</u>	준비(시험을 준비하기 위
	한 도서비 등 비용 지원을 포
	<u>함한다)</u>
<u><신 설></u>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
	교로의 재취학 재입학 또는

4. (생 략)<신 설>

② (생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 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 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 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진학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	<u>_</u>
램의 개발·보급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	<u>`</u>
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어	_
따른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호	<u>-</u>
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힌	- -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_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
	-
	-
	-
	-
-	
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
	-
	-
②	-
	-
	-
	-
	_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후

③ • ④ (생 략)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 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 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 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 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
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12개월</u>
<u>1</u> 2개월
<u>== :, </u>
· ⑥ 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 후

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서면·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생략)